

번역과 근대 한국

— 법학과 국가학 문헌을 중심으로

김효전 | 동아대학교 법학과

■ 논문분야 법학

■ 주제어 번역, 근대 한국, 교과서, 만국공법, 법학 서적, 국가학

■ 요약문

서구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근대 한국의 교과서 정책과 번역은 어떠하였으며, 을사 보호조약 이후에는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살펴본 후 법률 서적의 대표적인 예로서 『만국공법』과 관련된 저서로서 『이언』과 『공법회통』의 발간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1895~1910년 사이에 발간된 법률 서적을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법, 소송법 기타 문헌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다음에는 국가학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해제하였다. 법학과 국가학에 관한 번역 문헌은 대체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문헌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중 일본어를 텍스트로 한 것이 약 8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이 분야의 문헌을 거의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번역을 통한 근대화 문제를 분석한 데에 커다란 학술적 가치가 있다.

1. 서설

번역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일찍이 『독립신문』은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런고로 각칙 학문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쳐야 남녀와 빈부가 다 조공식이라도 학문을 비호지 한문 비화가지고 한문으로 다른 학문을 비호려 하거든 국 에 이십여년 그 노릇은 할 사람이 못 도리지라. 국문으로 책을 번역 하거든 두 가지 일을 제일 먼저 하여야 할 터이라. 첫지는 국문으로 옥편을 모드러 글자 쓰는 법을 정히 늦고(…) 들지는 국문을 쓸 때에 독립신문 모양으로 말마다 써여 쓰거든 석거 보고 넓기에 불평한 일이 업슬 터이요(…) 바라건디 조선 학부에서 조선 국문 옥편을 모드러 말 쓰는 규칙과 문법을 정하여 전국이 그 옥편을 좇츠 말과 글이 같도록 쓰고 넓게 하며 각칙 학문 책을 번역할 썩에 이 옥편에 있는 규칙대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하게 만드는 것이 조선 교혹하는 기초로 우리는 알고…¹⁾

이처럼 먼저 사전편찬과 문법의 체계적인 정리와 한글의 띄어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이외에도 번역 문화가 성공하고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만세보(萬歲報)』도 일본의 문명 부강은 바로 번역에서 기원하는 것이며, 청나라에서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번역을 장려한다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자주 보도하고 있었다.

• 淸國의 法制翻譯 淸國의 遣洋大使는 歐米各國을 巡回할 時에 隨員이 到處에 法律制度에 關한 書類를 調査하야 翻譯할 터인디 其 文字가 國情을 隨하야 根本的이 差異함으로 譯文의 意義를 分明히 解了하기 不能하야 到底히 實行에 適當한 要領은 專히 日本의 法律制度를 調査하야 翻譯하기로 昨今 日本 各省에 交涉한다더라.²⁾

• 憲法新書 天津報를 據한즉 去年 豫備立憲의 輪旨를 屢次 頒發함으로부터 擬由天津하야 先行시판할시 現在 天津府에 地方自治局을 設立하고 並히 名儒를 聘하야 憲法新書를 編譯하야 將次 告成함이 大約今春에 即可出版이라더라.³⁾

• 譯書近呈 支那報를 據한즉 兩江總督 端方氏가 曾前出洋하야 德國과 奧國에 在할 時에 其 內政과 軍政과 地方自治制度之書의 數百種 冊子를 大購하야 始에 日本博士를 請하야 東文으로 譯成하고 再由留東學生하야 漢文으로 轉譯하야 名宿을 另延하야 刪潤十個月間에 成書 六七百萬言이라 仍히 刊布하고 皇帝의 繕錄進呈하얏다더라.⁴⁾

• 政治書籍의 刊布 淸國政府에서 出洋考政大臣의 購來한 各國 政治書籍을 業已編譯成書하얏스면 亟宜刊印頒行하야 以開民智할지라. 考政大臣等을 請하야 從速刊印하느디 所需經費는 度支部로 由하야 籌給하고 現在에 澤公과 載尙書가 南洋大臣 端方氏를 電致하야 會商하고 不日에 刊印即行한다더라.⁵⁾

2) 『만세보』 1906년 9월 23일자.
3)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6일자.
4)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24일자.
5)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6일자 外報.

1) 『독립신문』 1897년 8월 5일자.

여기서 보듯이 중국은 근대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서구의 법제와 정치에 관한 서적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다.⁶⁾ 또한 일본인 고문관을 초빙하여 법제개혁을 시도했다.⁷⁾

이와는 반대로 당시의 조선에서는 외국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번역 작업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또는 개인적으로도 상당수의 서구 문물을 번역하고 이를 소개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⁸⁾ 또 외국인을 고빙하여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것도 일본이나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경우는 열세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국력의 차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진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⁹⁾

중국어로 번역된 각종 서양의 저작들은 일본 책과 함께 수입 소개되어 바로 조선의 식자층에게 전달되었다.¹⁰⁾

6) 黄源盛, 1995, 「晚淸の法制近代化の原因及びその展開」, 京都大學 日本法史研究會編, 『法と國制の史的考察』, 信山社, 297쪽 이하; 근대 중국 법령의 영역과 불역은 Padoux, G.(1936), *List of English and French Translations of Modern Chinese Laus and Regulations* 참조.

7) 이에 관한 일본 측의 문헌은 매우 많다. 영문으로는 Reynolds, Douglas R.(1993), *China 1898~1912: The Xinzheng Revolution and Japan*, "Chinese Legal, Judicial, and Constitutional Reforms: Japanese Blueprints and Advisers," Chapter 10, Harvard Univ. Press, pp. 179~255 참조.

8) 상세한 것은 三橋猛雄, 1966, 『明治前期思想史文獻』, 明治堂書店 참조.

9) 일본의 경우는 武内博, 1995, 『來日西洋人名事典』, 日外アソシエート; ヌネスコ東アジア文化研究センター編, 1975, 『資料御雇外國人』, 小學館; 梅溪 昇, 2007, 『お雇い外國人: 明治日本の脇役たち』, 講談社; 梅溪 昇, 1974, 『お雇い外國人の政治法制』; 今井歴次, 1975, 『お雇い外國人』, 麗島出版會 참조.

한국의 경우는 김승태·박혜진, 1994,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참조.

10) 법률과 정치에 관한 구체적인 서적 목록은 『황성신문』 1906년 6월 8일자; 김효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708~709쪽 참조. 또한 김봉희, 1999,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91~299쪽도 중국 서적의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봉희는 일본에서 수입한 책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처럼 광고에 나타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299쪽), 이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4일자에 실린 전면의 일본 책 광고를 보면 일본 同文館 발행의 특약점이 日韓書房이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전제에서 볼 때 근대 한국에서 번역 문화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번역하고 또 그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한 분야로서는 문학에서는 김병철(金秉喆)의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1975, 을유문화사)와 성서번역사에서는 이진호(李鎭昊)의 『한국성서백년사』(전2권, 1996, 대한기독교서회)가 대표적인 것이며,¹¹⁾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연구는 고사하고 아직 근대 한국에서 번역된 문헌의 목록이나 서지적인 작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²⁾

근대 한국의 번역사를 연구하려면 어떤 시대에 어떤 책이 번역되었고, 그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것만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정

11) 기타 성경 번역에 관하여는 김재현, 1999, 「1877~1887 사이의 한글 성경의 번역—Ross 역, 이 수정의 마가복음, 언더우드 역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김화현, 1999, 「우리말 성경 번역사에서 펜워 역 신약전서의 위치」, 침례신학대학교; 윤경로, 1997, 「Homer B. Hulbert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정숙, 1995, 「구한말 험버트(Homer B. Hulbert)의 대한 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제22호; 조정경, 1985, 「J. S. Gale의 한국 인식과 재한 활동에 관한 연구」, 『한성사학』 제3호; 주홍근, 1995, 「선교사 측—의 생애와 한국 기독교에 끼친 공헌」, 피어선신학교 신학연구원; 한규무, 「게일(James S. Gale)의 한국 인식과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1898~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 유영렬·윤정란, 2004,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와 한국 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71~281쪽; 김봉희, 1978, 「국역 성서의 서지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양선, 1956, 「한국의 성서번역사(6)」, 『성서한국』 제2권 2호; 김봉희, 1967,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 제3호; 小倉進平, 「朝鮮の聖書翻譯」, 『文藝春秋』 第19卷 2號 등 참조.

12) 간단한 것은 김봉희, 1999,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참조. 이 책 128쪽의 「번역서의 문제」에서 중국의 활발한 번역은 “일단 일본에서 번역되어 일차적으로 정선된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황성신문』 1902년 2월 26일자를 근거로 대고 있으나, 중국은 일본에 앞서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의 서적들이 일찍부터 번역되고 있던 사실을 간과한 기술이다. 기타 강윤호, 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손인수, 1985, 『한국개화교육사』, 일지사; 백순재, 1970, 「개화기의 한국서지 1884~1918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1호, 179~224쪽; 이기준, 1985, 『한말 서구경제학도입사』, 일조각 등 참조.

부 당국의 교과서정책으로부터 외국어 교육, 번역자의 양성, 독자층의 분석, 도서관의 확충이나 출판사의 문제, 도서의 거래나 유통 과정 등도 함께 살펴 보아야 비로소 번역과 근대 한국의 면모는 올바르게 밝혀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검토할 능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관심사인 법학과 국가학¹³⁾에 국한하여 당시의 문헌과 자료에 입각한 실증적이며 문헌에 의한 고찰 방법으로 문제점을 부각하고 번역과 관련되는 점을 언급하고 나아가 점차 다른 분야에도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한다.¹⁴⁾

2. 교과서 정책

교과서는 교육의 기본 요소의 하나이다. 이는 무릇 법관양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한국 개화기에 식자들은 누구나 서구의 신식 학문의 수용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어떻게 흡수하고 섭취하는가, 즉 방법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¹⁵⁾

13)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6,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세종출판사;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의 문헌 해제 참조.

14) 이와 관련된 일본 문헌으로는 安宇植, 1982, 『翻譯から見た朝鮮の近代』, 雑誌『文學』編集部編 翻譯, 岩波書店, 140쪽 이하; 柳父章, 1982,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서혜영 옮김, 2003, 『번역어성립사정』, 일빛); 石塚正英, 柴田隆行 監修, 2003, 『哲學・思想翻譯語辭典』, 論創社; 古田裕清, 2004, 『翻譯語としての日本の法律用語』, 中央大學出版部 참조.

15) 예컨대 정부는 1899년 5월 의학교를 설립하고 서양 의학을 교수하기 위해 일본인 의사 후루시로 바이케이(古城梅溪)를 초빙하고, 또 같은 해 10월에는 의학 교과서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인 아사가와 마쓰지로(麻川松次郎)를 초빙했다. 후루시로는 1년 만에 사직하고 고다케 마쓰지로(小竹武次郎)가 부임했다. 이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감사헌 일 중두의 양성 소장 일인 고성매계씨가 중두 신서 훈 권을 본사에 보냈더니 학부 편집국에서 간판헌 칩이다. 어린 〇해들 중두 훈는디 매우 유초하야 만무 일싱 훈 터이니 스해 첨군자는 이 칩을 다 사다가 보시오. 고성매계씨는 외국 사람으로 우리 나라 어린 〇해들을 위하야 열심으로 이런 서책을 괴술하여 냈스니 그 뜻이 대단 감사 훈 즐노 우리는 아노라. (『독립

신문』 1898년 10월 3일자)

- 전 관찰스 지식영씨가 우리나라에 의술하는 학문이 업슴을 기탄히 녀여서 의학교를 설치하자고 학부대신 리도지씨의게 청원하엿더니 리 대신이 지령하기를 금년에는 예산이 업서서 홀수 업스니 명년도에 경비를 마련하여 가지고 의학교를 설치하겠노라 하엿다 하니 우리는 그 학교가 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고 지식영씨가 위칭에 대단이 유지함을 치하하노라. (『태국신문』 1898년 11월 17일자)

- 전 관찰스 지식영씨가 의학교를 설치하자고 학부에 청원하엿다는 말은 전일에 고지하엿거니와 우리는 미양 우리나라 일이 시작하는 것만 잇고 나중 실시되는 거시 업슴을 렴녀하엿더니 지금 들으니 학부국장 김각현씨가 의학교 설치하느디 열심히 주선하야 명년도 탁지부 예산에 너어 명년 일월 일일로부터 의학교를 기학하디 하니 치하하기를 마지 아니하겠더라. (『태국신문』 1898년 12월 16일자)

- 의학교에서 아직 서책을 준비치 못한 고로 일본 의손 훈 명을 고용하야 의서를 번역하게 하되 미삭 월급은 우리나라 돈 칠십 원씩 주게 하고 고빙기한은 금년 십이월노 작명하되 명년 일월에 다시 명약하야 고용하다가 나중애 교수까지 되게 하기로 한다더라. (『태국신문』 1899년 10월 16일자 및 『황성신문』 1899년 10월 16일자)

- 일본 정부에서 대한 빅성과 한국에 잇는 각 외국 사물을 금역하는 칩을 우리나라 병원으로 보니엿다더라. (『태국신문』 1899년 11월 16일자)

- 관립 의학교에서는 물리학 공과와 중두학 공과를 겸하여 공부하더니 중두학 공과는 다 맞치고 물리학 공과는 절반쯤 되었는데 화학 공과를 일간 시작할 터니 또 양력 터년 일월부터는 허부학 공과를 시작한다더라. (『태국신문』 1899년 12월 12일자)

- 훈동 관립 의학교에서 학원을 갈으칠 뿐 아니라 그 학교 안에 병원을 설치하야 인민의 질병도 구조하고 학원들을 견습식하기로 한다더라. (『태국신문』 1900년 3월 16일자)

- 의학 교관을 피명헌 김익남씨는 유학성으로 일본에 들어가 잇는 고로 학부에서 주일 한공관으로 던보하야 김씨를 즉시 보나라고 하엿다더라. (『태국신문』 1900년 4월 5일자)

- 의학교 학도들이 교수와 상지하야 근 일삭이나 폐학하엿더니 그 교수는 히고하고 일본 일등군의 소죽무즈랑(小竹武次郎) 씨를 고빙하느니라. 학도들이 작일부터 상학하야 교수 고빙하기 전에 산술을 공부한다더라. (『태국신문』 1900년 5월 29일자)

- 敎官非醫 (『황성신문』 1903년 10월 13일자 잡보).

일본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張巖은 의학교 교관이 되어 교재를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 「관보」 1901년 12월 6일자; 신동원, 1999,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274~275쪽; 배규숙, 1991, 「대한제국기 관립의학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古川昭, 2006, 「구한말 근대 학교의 형성」, 李成鉉 譯, 경인문화사, 335~349쪽 참조. 장도에 관하여는 후술 참조. 최근 현 연세의료원의 전신인 世富蘭德病院 醫學校 제1회(1908년) 졸업생의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김필순이 수업의 통역과 교재의 번역을 맡았다고 전한다. 7명의 졸업생 중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수입금 전부를 독립군 자금으로 내놓은 김필순 씨. 김씨는 외국인 교수가 진행하는 수업 통역을 도맡았고, 외과총론·내과학 등 영어 교재를 번역할 만큼 실력이 탁월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08년 6월 7일자.

법관양성소의 경우 초창기에는 6개월의 속성 과정이었고, 또 수강한 인원 수도 많지 않아서 붓으로 필기한 교과서를 사용했으며, 현재에도 당시의 필사본 교과서가 약간 남아 있다.¹⁶⁾

그러나 법관양성소는 교과서의 체계를 갖추고 정리하기 위해서 법부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다.

- 法書請刊 法官養成所에서 教科書冊을 刊行케 하여 달라고 法部に 報告하였는데 該刊行所入비는 假量 一萬圓인데 爲先 五千圓을 請求하였더라.¹⁷⁾

당시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서의 빈곤으로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으며 또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교과서를 주관하는 학부에도 일본인들이 관여하여 소위 참여관을 두고 있었다. 시테하라 히로시(幣原坦, 1870~1953)¹⁸⁾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 일본인 관리들은 학부 행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마저 일본어로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¹⁹⁾

이와 관련하여 학부 편집국에서 교과서를 순전히 일본 문자를 사용하여 편찬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황성신문』은 ‘학부 교과서 문제’라는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16) 『서울법대백년사』(자료집) 참조.

17)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23일자.

18) 시테하라 히로시는 오사카(大阪) 출생으로 도쿄대학을 졸업한 후 구한국 정부 학부 참여관을 지냈다. 그의 동생 시테하라 기주로(幣原 喜重郎, 1872~1951)도 구한말에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저서로 『日露間の韓國』(1905)과 『韓國政爭誌』(1907) 등이 있다.

19) 『황성신문』 1906년 4월 5일자. 상세한 것은 稻葉繼雄, 1994, 「舊韓國雇聘 日本人 ‘學部職員’의その後: 1907年 7月~1916年 10月の動向」, 『紀要(九州大)』比較教育文化研究施設 第45號; 稻葉繼雄, 1999, 『舊韓國の教育と日本人』, 九州大學出版會, 221~248쪽에 재수록 참조.

夫 教育者는 不特專主於術業이니 如政治, 經濟, 法律, 技藝, 農工商, 實業이나 及 物理, 化學이나 不問何種學問이던지 必培養其自國之精神으로 爲第一主義야 國家精神이 貫徹於人人腦髓하며 活發於人人性情야 養成國家的人民이라야 方爲開明之進步오 免致元氣之萎敗也리니 雖有 政治 法律 經濟 理化 等 高明國學問이라도 若 黷昧於自國之事蹟하며 迷失其祖國之精神이면 是는 卽一個 雇傭之人而已라. 惡能發國民之思想이며 擔國民之義務哉아...²⁰⁾

또한 『만세보』는 ‘자국정신(自國精神)’이란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체성을 강조한다.

…近日 我韓風氣는 自國精神이 何件物인지 不知하고 世界各國의 遊學이나 遊覽이나 公使 及 書記生 等の 關係가 有호는 者는 各其 外國의 知識과 事爲를 服從하고 欽迎야 大호 眼目과 馳騫호는 心情이 自國은 夢想外로 笑호는 弊害가 有호고 且 一種 毛病이 另有호니 各其 服從호는 外國을 影從호야 現今 英國運動이나 美國運動이나 法國 俄國運動 等 各種 運動호는 腕力이 有호다 稱호야 至尊을 欺도 하며 團 體를 損傷도 호야 畢意 前途 影響이 何涯에 至호는지 不知호니 果然 此 運動의 效力이 有호야 國威國光을 恢復할지면 大慶幸이라 稱호거이로디 運動의 效力은 一毫도 無호고 及히 隣邦에 惡感情을 惹起호며 自國의 妨害點을 增加호는 一流人士의 精神은 誤國精神이라 謂할지언정 愛國精神이라호는 稱키 難호는 不是라. 何由로 政治를 革新호고 文化를 漸進하야 實力을 涵養호고 國權을 光復할 自國精神을 團結호시오. 時局에 運動力이 有호다 自稱호는 者는 警省호고 回悟호야 大韓帝國人民으로 大韓帝國을 愛호는 精神을 團結호지어다.²¹⁾

20) 『황성신문』 1906년 4월 5일자.

21) 『만세보』 1906년 12월 9일자.

이와 같이 볼 때 교과서를 일본어로 가르치려는 계획은 물론 조선정부의 계획은 아니며 일본 통감부의 식민지 전초작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일반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황성신문』의 논설 ‘각종 교과서의 정신(各種 教科書之精神)’이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을 인용한다.

• 近日 我韓은 勿論 何等 學校호고 各種 教科書類가 總皆不備호거니와 頃聞 有志教育之家 一往往購入外國書籍호며 措辦鉅額資本호야 從事於教科書翻譯編纂之役이라 호니 吾輩는 對此等事業家호야 不勝同情之感而 賀之切호노니 教科書者는 卽教育之元素也라. 雖三百四十一郡에 家家設塾호며 村村設校라도 苟其教科書類가 不純完備호면 是는 教育之設備가 皆無補也니 焉用乎學校爲哉아.

然則 今此 教科書之編纂이 卽教育發達之第一機關也니 爲國民而拱祝者 一豈比尋常哉아 我大韓帝國이 從此로 其庶幾乎教育之擴張而開明之進步矣리니 此實現今之一等事業也로다. 雖然이나 吾輩는 有所一言仰佈於編纂諸君子之案頭호노니 蓋勿論何種教科書호고 意以教育國民으로 爲主義 卽 不容不將此韓國之精神호야 貫注於人人之腦髓然後에야 方可爲韓國 國民之教育이리니 日本所謂 日本人은 有日本魂者 一卽此也라.

今也에 編纂教科書籍호더 不能自辨力量호며 不能自出機 호야 以自述自國之魂膽호고 購入外國人之書籍호야 翻譯而纂輯호면 是其文法也 一外國人之文法也오 其模範也 一外國之模範也오 凡其言語句讀과 風謠俗尙이 無一而非外國之骨氣勝也리라. 然則 是는 直不過一翻譯家之纂述而已오 只是外國之魂膽而已리니 彼青年子弟之受學者를 固當以祖國之精神으로 灌溉栽培호야 使其心性骨髓와 視聽言動으로 薰陶漱沐浴호며 照濡涵蓄호야 以養成了十分完全之大韓國民이라야 可以挑發其愛國之精神호야 可以期望於他日獨立之基礎矣어늘 今也에 純全以外國人 之魂

膽으로 認爲教育之方針호면 非但迷失其本然性格而已라 亦豈無久而化卑之憂歟아.

試舉一事而 之호리니 我國之人이 從前教育之書를 一切用支那文字호야 自少至長으로 所讀習講究者가 皆支那之書籍而已라. 因此로 人人이 皆欽誦支那호며 服從支那호야 於是乎 其事大主義가 錮着腦根에 牽不可破호니 所以崩依賴之思想而望獨立之精神者 一此也오.

又不特我國而已라. 如日本維新之初에도 遊學泰西者 一多호야 輸入歐洲之文明故로 全國人民이 本半을 皆風 嚴於歐洲之化호야 歐化主義의 一 加 動 與論호며 定國是호다가 歷十數年至于今日에 始得底定은 抑諸君子之所習知者也라.

且以近來에 各外國語學者로 言之라도 學英語者는 主英國호고 學法語者는 主法國호고 學日語者는 主日本호고 學俄語者는 主俄國호야 各自以其所學者로 爲主者는 無이라. 卽其習熟見聞之培養精神이 偏倚於此故他니 以此觀之호면 教科書之關重於子弟가 顧何如哉아. 此豈可但以外國翻譯之書로 爲教育之元素가 可乎호며 亦豈可以草草齒蔑而爲者哉아.

當此教科書絕無之日호야 雖尋常小學之一個讀本이라도 若有編纂云者면 誠爲教育萬幸이로더 只以他人之糟粕으로 塗抹粧撰호야 依樣畫葫호고 無一片韓國精神之貫澈感發者호면 是는 則使者之라도 恐不若無之爲愈일가 호노니 諸君子는 其到底注力於此를 十分盼望也호노라.²²⁾

그리하여 법관양성소 교관은 자신이 교재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으며, 그중 김상연과 같은 교관은 역사 교과서와 같은 일반 교재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신문의 보도는 아래와 같다.

• 萬國史新撰 年前에 日本에 遊學호야 政治학을 卒業歸國호 金祥演氏가 現

22) 『황성신문』 1906년 5월 30일자.

今 各 官公私立學校의 教科書가 完全치 못함을 慨歎하야 多年 研究의 結果로 精選萬國史 冊子를 撰述하얏는디 第一 各學校 教科書에 適合할 뿐 아니라 海內 有志 新學者의 參攷閱독하기에 極히 緊要하니 是는 但 金氏의 多年 研究의 勞若를 慰 賀할 뿐 不止라. 此 冊을 因하야 一般學校에 新鮮完備한 萬國歷史教科書를 得은 今 日 教育界를 爲하야 十分 祝喜 事라 하노라.²³⁾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교과서를 저술하거나 번역할 인재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국선(安國善, 1878~1926)이나 김상연(金祥演, 1874~?) 처럼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역사학, 교육학, 경제학 등의 저서를 번역하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처지에 있지도 않을 만큼 상황이 궁핍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절박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교재의 편찬은 주로 중국이나 일본 서적의 번역 내지는 번안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민족의 주체성을 망각한 채 무분별하게 책자를 펴내어서 뜻 있는 인사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대한매일신보』는 「글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경고함」이라는 논설 속에서 번역은 ‘문명의 수입’ ‘학문의 근본’ ‘부강하는 재료’라고 하나 이것은 좋고 아름다운 글의 번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 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글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여 그 나라 사정신을 해롭게 하며 영

23)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15일자. 이 책은 William Swinton, *Outline of the World History*의 번역이며, 일본어 역으로는 西山義行 譯述, 1883, 『萬國史』; 植田榮 譯, 1883, 『萬國史』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책의 광고(『황성신문』 1906년 12월 12일자)에서 김상연은 자신을 “日本東京早稻田大學政治科卒業生”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는 1902년 7월 도쿄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교명이 와세다(早稻田)대학으로 바뀐다.

광을 타락케 하면 또한 국가에 큰 죄인이라도.

근일 한국에 글을 번역하는 거시 점점 성함매 글을 번역하는 자들이 혹 외국을 존송하는디 정신이 취하며 혹 도리가 불지 못하여 다만 외국 서적이라 하면 모다 문명 서적으로 맞으며 다만 외국인의 말한 바—라 하면 모다 문명의 말인줄노 알 어서 즈고 나라는 이덕이 되든지 동족은 우마가 되든지 외국 인민 존송하고 외국 인만 신송하니 이도 또한 국가의 흥 가지 크게 불행한 일이라도.

엇던 서관에서 번역한 대한디지를 보와도 널으기를 한국에 데일 꺾적 인민은 예뻐 종자뿐이라 하며 또 글으대 가락국은 일본 출신족의 식민국이라 하고 또 글으대 한국은 일본 민족과 부여 민족이 일본 산음도에서 방출된 자가 이주한 거시라 하였스니 오호라—이거시 엇진 황설인가.

(…) 이런 정신 업는 자는 고사하고 이런 서적을 교과서로 쓰는 자는 또한 엇던 학교인가. (…) 원컨대 글을 번역하는 제공들은 흥상 주의하여 외국인의 도흔 것은 본밧고 그른 것은 본밧지 말며 나의게 리로운 것은 취하고 리롭지 못한 거슨 버려서 도쿄 아름다운 번역이 만히 나기를 바라노라.²⁴⁾

이 논설은 단순히 번역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외국 학문을 연구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태도 나아가 문명비판에까지 언급한 것으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적인 번역과 함께 종래의 순한문식의 교재에서 탈피하여 국한문 내지는 순한글로 된 책자가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민족의식의 각성과 함께 국문연구회가 조직되는 등 국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4)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9일자 논설.

• 國文研究會組織 國文研究會를 去 金曜日 下午 七點에 勳洞 醫學校內로 臨時開會하고 規則과 任員을 薦定하였는데 會長은 尹孝定氏요 總務는 池錫永氏요 研究員은 周時經 朴殷植 李能和 柳一宣 李鍾一 田龍圭 鄭雲復 沈宜性 梁起鐸 劉秉珽氏等 十人이 爲先 被薦되고 編纂員은 池錫永 劉秉珽 周時經 三氏요 書記二人에 田龍圭氏 一人만 爲先 選定하였는데 研究員會는 每 金曜日 下午 七點이요 通常會는 每月 第四 日曜日 下午 四時에 開會하기로 定하였더라.²⁵⁾

한편 주시경(周時經, 1876~1914)²⁶⁾은 ‘필상자국문언(必尙自國文言)’이라는 기고(寄書: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글로 저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今日를 當하여 有志하신 이들이 教育 教育하니 既往 漢文을 學習한 者에게만 教育코자 ㅎ심이 안이겠고 漢文을 不解하는 者는 幾十年이던지 不計하고 漢文을 教授한 後 成業됨을 待하여 諸他學術을 乃教코자 ㅎ심도 안일지라. 然則 英文이나 日語로 教育코자 ㅎ시니는 英文이나 日語를 我民이 何以知之리오 漢文보다도 倍難할지라. 如今之世를 當하여 特別이 英德法日清俄 等國의 文言을 學習하는 者도 必有하여야 겠으나 全國人民의 思想을 變化하며 智識을 發興케 ㅎ라면 不可不 國文으로 各種 學文을 著述하며 繙譯하여 주어야 될지라. 英法德 等國은 漢文의 形狀도 不知히 되 如彼히 富強興進하는 지라. 我半島가 四千餘年前부터 開基한 二千萬 衆社會에 時時로 通用하는 言語를 以口報傳하던 것도 莫大欠事어날 國文頒布된지 四百六十餘年에 語典一券도 不製하고 漢文만 猶事하는 것이 었지 羞愧치 안니호요. 自今以後로는 國文을 賤視하는 陋習을 變하여 我國文言의 法兵義를 極力講求하고 字典文典讀本을 著成하여 더욱 精利한 文言이 되게 ㅎ 쏜더러 我全國 上下가 國文을 我國의 本 로 崇用하여 我國이 世界에 特立되는 特性의 表柄을

25) 『황성신문』 1906년 12월 24일자.

26) 신용하, 1977,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사회학회연구』 제1집 참조.

堅持하고 自由萬萬歲를 永享하기 伏乞하노이다. (完)²⁷⁾

또한 이능화(李能和, 1869~1943)도 국문법의 통일과 한자 옆에 한글의 병용을 주장하고 있다.²⁸⁾

여하튼 법학 서적은 일찍부터 판매되었으며, 『독립신문』에 실린 서점(大東書市) 광고는 다음과 같다.

[광고 1]

대동 서시

종로 대동서시란 칙서는 예수교 성경과 공법 화학 턴문 디리 산학 의학 등서와 학부 칙과 팔월 스변보고서를 파오니 첨군주는 사 보쇼셔.²⁹⁾

한편 1905년을 전후로 하여 새로운 저술들이 다수 발간되었으며, 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서적들이 수입되어 조선의 지식계층에 보급되고 있었다. 예컨대 高裕相書 는 광고에서 “新學問 各種 書籍을 自上海等地로 多數 輸入發售故로 開錄于左호오니 有志僉君子는 光臨購覽ㅎ심을 至盼”³⁰⁾이라고 한 후 도서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중국 상하이³¹⁾ 등지로부터 많은 서적이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황성신문』에 실린 정치학과 법학 관계 서적 광고를 예로 들어 본다.³²⁾

27) 『황성신문』 1907년 4월 6일자.

28) 『황성신문』 1906년 6월 2일자.

29) 『독립신문』 1896년 7월 28일자.

30) 『황성신문』 1906년 11월 2일자.

31) 당시 “上海는 東亞의 文明自由之地”라고 소개되고 있다(『황성신문』 1908년 6월 23일자).

32) 『황성신문』 1906년 6월 8일자.

[광고 2]

『황성신문』 1906년 6월 8일자

[광고 3]

『황성신문』 1906년 6월 16일자

법학의 경우에는 다음의 修文書館의 전문적인 서적 광고에서 보듯이, 1910년 에는 이미 교과서류는 완전히 정비된 상태였다.³³⁾

33) 『황성신문』 1910년 3월 6일자.

[광고 4]

『황성신문』 1910년 3월 16일자

한편 양정의숙에서는 법률강의록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 法律講義錄 北部 北卅洞 修文書館에서 一般同胞의 法律上 知識을 啓發하기 爲하야 私立 專門 養正義塾의 編裁한 法律講義錄을 發賣한다더라.³⁴⁾

양정의숙은 1905년의 설립부터 1913년 보성전문학교와 합병하기까지, 『법학통론』과 『국가학』을 비롯하여 김계근(金葵根)의 『형법통론』 등 상당수의 법학 관련 교과서를 발간했다.³⁵⁾

- 普專學生의 激增 私立 養正義塾은 今回에 組織을 變更하야 財團法人 私立 養正高等普通學校로 改稱認可받은 既報하얏거나와 元來 同 義塾은 法律을 專門으로 教授하던 바 今回 組織을 變更함과 同時에 一二年에서 修業하던 學生 多數는 私立 普成專門學校 法律科 各 年級으로 轉學하얏슴으로 普成 學生數는 非常히 增加되야 每日 出席生이 各 年級을 通하야 三百餘名에 達하얏다더라.³⁶⁾

34) 『대한민보』 1910년 3월 13일자.

35) 이영석 외, 『양정의숙의 흔을 찾아서』, 양정의숙연구회, 2007. 5. 15 양정고등학교 대강당. 양정중고등학교와 양정의숙연구회에서 지난 2008년 5월 6일부터 2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大韓帝國 법학전문학교 교과서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36) 『매일신문』 1913년 10월 4일자.

당시 양정의숙은 법관양성소와 보성전문학교와 함께 3대 법학교의 하나였으며, 1913년 10월부터 양정고등보통학교로 격하였다.³⁷⁾

이와 같은 강의록의 발간은 일본의 개명기에도 유행하던 방법이며,³⁸⁾ 이것은 통신강의록의 형태로 발전하여 일제시대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법관양성소에서는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하고 매월 교과서 대금을 징수했다. 이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 養成所의 教科 法官養成所에서 往者에는 教科書を 學徒에게 分給하고 教科書價로 毎月 學生에게 一式 收捧히더니 從今爲始하야는 該 教科書を 無代金으로 頒給하느니 或 學生들이 時間을 欠闕하면 該時에 講習하는 教科書を 分給치 아니함으로 學生들이 教科書에 對하야 困難하다고 說이 有히더라.³⁹⁾

특히 보성전문학교에서는 보성사라는 인쇄소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교과서를 발간했다. 예컨대 많은 교재를 편찬한 안국선은 번역원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구연학(具然學)의 단편 『설중매』(1908년)의 한 구절을 보면 당시의 번역가의 정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순이 추연히 말하되 “나도 사방에 표박(漂泊)하여 아무 일도 이룬 바이 없고 세월만 헛되이 보내며 경성에 온 후로부터 서책을 번역하여 생계를 하더니, 거월(去月)에 근대사(近代史) 초권을 어느 서관에서 출판할 차로 가져가더니, 아무리

37) 『대한민보』 1913년 10월 5일자는 사립 양정고등보통학교의 개교식을 보도하고 있다.

38) 일본의 사정은 丸山眞男·加藤周一, 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新書(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옮김, 이산) 참조.

39) 『황성신문』 1908년 3월 24일자.

재촉하여도 번역비를 보내지 아니하여 거월부터 식가를 갚지 못했기로 아까도 주인에게 불쾌한 말을 듣고 심화가 나는 중에 마침 시골집 편지를 보니, 양친이 나의 직업 없음을 걱정하여 벼슬이 되지 아니하거든 하루라도 바빠 내려오라 하셨으니, 오늘날을 당하여 대답할 말씀이 없으며 번역하여 책 권이나 만들면 혼자 생계는 되나, 연로하신 양친의 봉양할 도리가 없으니 이로 걱정이로다.”⁴⁰⁾

이처럼 번역하는 사람의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번역이란 주로 일본 문헌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서구의 원전에 입각한 번역은 많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며,⁴¹⁾ 또 외국어를 수학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⁴²⁾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조선 정부는 1891년에 일어학교,⁴³⁾ 1894년에 영어학교,⁴⁴⁾ 1895년에 법어(法語)학교, 1896년에 아어(俄語)학교, 1897년에 한어(漢語)학교 그리고 1898년에 덕어(德語)학교⁴⁵⁾를 설립하여 각종 관립외국어학교(Royal Foreign Language School)를 두어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일합방 이후에는 외국어

40) 최찬식 외, 1984, 『추월색·자유종·설중매』, 범우사, 130쪽.

41) 사전편찬에 관하여는 이병근, 2003, 『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한국어 對譯辭典과 근대화』, 권태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5~37쪽 참조.

42) 이광린, 1985, 「구한말의 관립외국어학교」,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148쪽.

43) 문헌은 稻葉繼雄, 1997, 『舊韓末 ‘日語學校’의 연구』, 九州大學出版會; 이웅덕, 1996, 「조선총독부의 일본어교육에 관한 일고: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일본학지』(명지대학교) 제16호, 165~187쪽.

44) 문헌은 김윤희, 1986, 「구한말의 영어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우, 1978, 「구한말 외국어교육에 관한 연구(Ⅰ)」, 『공주사범대학논문집』 제16집.

45) 문헌은 김효진, 2000, 「구한말의 관립덕어학교」, 『독일학연구』(동아대학교) 제16집, 103~130쪽; 김정진, 1971, 「한국 독일어교육의 비평사적 고찰」, 『독일문학』(한국독어독문학회) 제11집, 3~55쪽 참조.

학교와 법학교 등이 폐지되었다.⁴⁶⁾

한 마디로 근대의 중국이나 일본처럼 서구 문명의 섭취를 위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번역을 권장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어학의 수준도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책도 예전의 중국식 법률책과 신식 법률책을 아울러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법관양성소의 교육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행정과 사법, 그리고 국민의 법률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몇 가지의 실례를 신문보도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물론 심지어 지방에서 유지가 법률을 연구하고 강습하는 경우에도 신구법을 함께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실정을 『황성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法律研究會 慶南 晉州郡에 有志諸氏가 時局의 變遷과 人民의 朦昧함을 慨歎하여 法律研究會를 組織하고 會長 李喆宇氏 等 數拾餘人이 新舊法律書籍을 廣求買得하여 每朔 二次式 例會를 公開하고 法律의 原理와 訴訟의 第次를 專力 演述하는 故로 遐邇에 法律發達이 亦一盛舉라고 南來人의 稱頌이 有하다.⁴⁷⁾

관공서에서도 신구 법령 두 가지를 모두 비치하고 있었으며, 형법대전 등 새로운 법령의 보급을 위해서 힘쓰기도 했다.

- 坡 勸諭 坡州郡守 金奎昌氏가 赴任之初에 吏屬를 招集官庭하고 舊習의 成癖한 弊와 新式의 改良을 事由를 說明하였다니 各班吏屬이 皆曰可라 하고 一齊

髮하였다 하고 刑法大典 十餘帙을 各面에 一帙式 出給하고 面長에게 曉諭曰 人民이 法律을 習知한 後에야 官長에게 橫暴壓制를 不受할 터이니 人人習讀케 하라 하였다더라.⁴⁸⁾

- 法規編纂通牒 政府에서 各府部에 通業되 現行法規를 方自本部로 編纂인바 地方制度 及 職制에 不無抵觸하고 新舊存拔을 碍難辨別이기 通牒하노니 現行하는 一應規程을 速辦贍交하여 以便纂輯케 하라 하였다더라.⁴⁹⁾

- 公物被燒 順興郡守 金昌洙氏가 法部에 報告되 去月 拾一日에 義徒 五百餘名이 本部에 闖入하여 衙舍 及 公 와 民家 一白餘戶를 衝火燒진이온디 事務廳 及 書記廳에 儲存하였든 刑法大全 法規摘要와 土地家屋證明簿와 手數料規則과 大典會通과 續大典과 大明律과 無冤錄 其他 裁判에 關한 諸般公簿와 山地尺 檢屍尺 銀針 等 許多 公物이 沒數 被燒하였다더라.⁵⁰⁾

- 書類請給 利川郡守 李喆榮氏가 法部에 報告되 本郡守가 拾月 三拾一日에 赴任視務이온바 本年 八月 拾四日 義擾時에 適值空官하고 書記 等이 爲慮衝火하여 本郡流來 一應文簿와 其他 裁判에 關한 諸般 書類를 一一收聚하여 藏置東軒이옵더니 守備隊가 入接東軒하고 該 文簿을 兵士 等이 各 自分持하여 或塗비於處所하고 或消融裂用用하여 一無餘存하고 凡於公文이 無憑可考에 言念邑事면 極爲悶然하온바 最所聚要件 刑法大典 大明律 大典會通 續大典 法規摘要 土地家屋證明 簿手數料規 無冤錄 諸件를 不日 下送하시와 使之無碍舉行케 하라 하였다더라.⁵¹⁾

46) 1911년 10월 10일 직격 257호에 의해서 외국어학교는 폐지되고, 메이지 44년(1911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독부관보」 제342호 1911년 10월 16일자.

47) 『황성신문』 1908년 11월 12일자.

48) 『황성신문』 1906년 3월 8일자.

49) 『황성신문』 1907년 6월 1일자.

5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4일자.

5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2일자.

법령체계의 혼란으로 일반 국민들의 법생활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법령의 집행뿐만 아니라 법학교육 등 모든 분야의 혼란을 면할 수 없었다.

3. 『만국공법』의 전래

1) 『만국공법』과 『이언』

서양의 국제법 책은 언제 조선에 전래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에서는 미국인 선교사인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韪良, 1827~1916)이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36)를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제목으로 1864년(同治 3년)에 발간했고, 일본에서는 바로 다음해에 이 책의 번각본(飜刻本)이 발간되었고, 네덜란드인 피세링(Simon Vissering, 1818~1888)의 강의록을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 1829~1903)가 1868년에 『畢栖林氏說 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출판했다.

이에 대해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제목도 우연히 같고...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가리기가 힘들 정도죠”⁵²⁾라고 하는데, 쓰다 마미치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마틴의 한역본(漢譯本)을 참고하여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저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마틴의 『만국공법』이 조선의 식자층에도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며, 공공문서에 나타난 것은 1877년 12월

52) 丸山眞男·加藤周一, 1998, 『飜譯と日本の近代』, 岩波新書, 119~120쪽(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2000, 『번역과 근대의 일본』, 임성모 옮김, 114쪽).

17일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에게 『성초지장(星指掌)』과 『만국공법』을 기증했다는 『왜사문답(倭使問答)』과 『왜사일기(倭使日記)』, 『선린시말(善隣始末)』 등의 기록이 최초라고 본다.⁵³⁾

그러나 한국어로 된 최초의 국제법에 관한 문헌으로 『이언(易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인 정관응(鄭觀應, 1841~1923)의 저작으로 1871년에 간행된 것이며, 한국에서는 1883년에 복각본(複刻本)이 발간되고 한글 번역본(4책)도 발간되었는데, 간기(刊記)가 없어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복각본이 만들어진 직후라고 생각된다.⁵⁴⁾ 이 책이 번역된 것은 정부 관리와 사상가들이 『이언』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국민들에게 널리 읽혀 부국강병 내지 개화를 기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국제법과 관련된 항목은 「논공법(論公法)」, 「논의원(論議院)」, 「논세무(論稅務)」, 「논상무(論商務)」 등이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있다. 이 『이언』에 대해서는 황성신문 논설에서 「기우생소전(杞憂生小傳)」이란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다.⁵⁶⁾

이광린 교수는 『이언』의 영인본을 『조선학보(朝鮮學報)』에 게재했으며,⁵⁷⁾ 최근 이회승이 번역한 『성세위언: 난세를 향한 고언』(2003, 책세상)이 발간되었다.

53)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禮와 서양 공법』, 나남출판, 178쪽.

54) 이광린, 1985, 「『이언』과 한국의 개화사상」, 『개정판 한국개회사연구』, 일조각, 27쪽.

55) 이광린, 앞의 책, 27쪽.

56) 『황성신문』 1890년 9월 28일자.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721쪽; 정선태, 1999,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473쪽에 재수록.

57) 자료 李光麟, 1985·1986, 景印 『易言』, 平木實譯, 『朝鮮學報』 제117·118집, 131~316쪽.

2) 『공법회통』의 발간

『만국공법』에 대해서는 이를 시무의 학문이라고 연구해야 한다는 견해와 반대로 이를 사서라고 배척하는 학파 등이 대립했으나,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마침내 조선 정부도 국제법 지식의 보급을 위해서 1896년 블룬칠리(Johann Caspar Bluntschli, 步倫, 1808~1881)의 『공법회통(公法會通)』(1880, 丁黷良譯)⁵⁸⁾을 학부 편집국장 이경직(李庚植)의 서문⁵⁹⁾을 붙여 관리들에게 배포했다. 이 『공법회통』에 대해서 블룬칠리의 『일반 국법』을 번역했다는 서술⁶⁰⁾과 *Geschichte des allgemeinen Staatsrechts und der Politik*를 번역했다는 견해⁶¹⁾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 책은 블룬칠리의 국제법 책인 *Das moderne Völkerrecht*(1868)⁶²⁾를 번역한 프랑스어 판을 텍스트로 번역한 후 다시 독어판을 참조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 『공법회통』은 블룬칠리의 국제법 책 862장과 부록에 붙인 미합중국의 행군훈계(行軍訓戒) 157장⁶³⁾을 합하여 전체 10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⁴⁾

이 책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독립신문』의 논설 ‘광학회 소고’에서 “미인

58) 이 『공법회통』을 비롯하여 『만국공법』, 『공법편람』은 1981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59) 상세한 것은 김효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478~481쪽.

60) 1996,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 187쪽은 Benett, A. A. and John Fryer(1967),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into Nineteenth-Century Chin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 122를 근거로 인용하는 데 타당하지 않다.

61) Svamerud, Rune(2001), “The Notion of ‘Power’ and ‘Rights’ in Chinese Political Discourse,” in: Lackner, M., I. Amelung and J. Kurtz (eds.)(2001), *New Terms for New Ideas.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oston, Köln, Brill, p. 135.

62) 이 책은 1978년 부산의 민족문화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63) 원제는 Instructions for the Government of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1863)이다.

64) 김효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472쪽에서 “행군훈계는 모두 1019장으로 되어 있다”고 서술한 부분은 “공법회통은 862장이며 (행군훈계는 157장으로 합하여 모두 1019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수정한다.

丁黷良은 公法會通 등 서책을 번역했고⁶⁵⁾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또한 “시무에 맞당한 서책”⁶⁶⁾이라고 하여 외국어학교를 비롯하여 낙영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상품으로 수여하기도 했다.⁶⁷⁾

이 책 말미에는 ‘학부편집국개간서적정가표(學部編輯局開刊書籍定價票)’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萬國地誌	二十四錢
萬國略史 上下	四十錢
朝鮮歷代史略 漢文三冊	五十錢
朝鮮歷史 三冊	四十錢
國民小學讀本	二十錢
朝鮮略史	八錢
朝鮮地誌	二十錢
小學讀本	十錢
牘蒙彙編	八錢
夙惠記略	十四錢
輿載撮要	四十錢
地璆略論	八錢
東輿地圖	八錢
近易算術 上下	八十錢
簡易四則算術	四十錢
士民必知 漢文	三十二錢

65) 『독립신문』 1899년 2월 6일자.

66) 『메국신문』 1898년 11월 2일자.

67) 『독립신문』 1899년 7월 7일자; 『메국신문』 1900년 5월 25일자 참조.

西禮須知	十二錢
尋常小學 卷一	十四錢
卷二	十六錢
卷三	十六錢

여기서 보듯이 대부분은 일반 국민의 교양을 위한 보통교육 정도의 책자이며, 『공법회통』은 일질(一帙) 삼책(三冊) 일원(壹元)으로 고가에 속하는 책이다.

3) 한국인에 의한 국제법 교과서

중국으로부터 마틴(丁韞良)의 한역(漢譯) 국제법 책인 『만국공법』, 『공법편람(公法便覽)』, 『공법회통』, 『성초지장(星 指掌)』, 『육지전에신선(陸地戰例新選)』, 『중국고세공법(中國古世公法)』 등이 조선에 직수입되었다. 그 외에도 홀(William Edward Hall, 霍珥, 1835~1894)의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1880)을 번역한 『공법신편(公法新編)』(1902)⁶⁸⁾을 비롯하여 로렌스(Thomas Joseph Lawrence, 勞麟賜, 1849~1919)의 『만국공법요략(萬國公法要略)』(1903)이 알렌(Young J. Allen, 林樂知, 1836~1907)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이 책은 1906년 달성(達成) 광문사(廣文社)에서 상하이(上海) 미서관(美書館) 원본(原本)을 중간(重刊)했는데, 여기에는 석람(石藍) 김광제(金光濟)의 추서(追書)가 붙어 있다.⁶⁹⁾

또한 텍스트를 밝히지 않은 박정동(朴晶東)이 번역한 『국제공법지(國際公法志)』(1907)도 발간되었다. 이 책은 『경향신문』 155호와 156호에 광고를 내

68) 이 책은 光緒 29년(1903년) 2월 商務印書館에서 인쇄한 것이다. 원서 3판(3rd ed. 1890)은 법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운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三宅恒徳 譯, 1888, 『浩氏 國際法 上 卷』과 立作太郎 譯, 1899, 『ホ-ル氏 國際法』이 발간되었다.

69)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734~736쪽.

기도 했다.

그 밖에 『독립신문』에 의하면 ‘각국과 통상하는 약장(約章) 책 상하 3권 발간’⁷⁰⁾이란 기사가 보이는데, 정확한 책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1899년에 나온 『한청의약공독(韓淸議約公牘)』도 『황성신문』에 자주 광고를 내고 있다.⁷¹⁾

그러나 한국인의 손에 의한 체계적인 국제법 책은 1907년경에 발간된 석진형(石鎭衡, 1877~1946)⁷²⁾의 『평시국제공법(平時國際公法)』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발간연도나 발행처 등 출판 사항은 분명하지 않지만, 자신이 출강하던 보성전문이나 양정의숙 등의 교과서로 사용된 것 같다.⁷³⁾ 석진형은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출신으로 다카하시 사쿠에이(高橋作衛)의 『평시국제법론(平時國際法論)』 등을 참고했다고 적고 있다.

4. 법학 관련 서적의 번역

1) 헌법 관련 저작

헌법과 관련된 외국 문헌의 번역으로는 미국인 로버트(H. M. Robert, 1837~1923)의 『회의진행법』⁷⁴⁾을 윤치호가 번역한 『의회통용규칙』⁷⁵⁾이 가장

70) 『독립신문』 1899년 1월 14일자.

71) 『황성신문』 1899년 12월 19일자.

72) 석진형에 관하여는 최종고, 2007,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학교출판부, 86~100쪽 참조.

73)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0, 『근대 국가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737~739쪽.

74) *Robert's Rule of Order*(1876). 최근의 한국어 번역은 한국회의법학회, 2001, 『로버트 회의진행법』, 635쪽이 있으며, 일본어 역은 安藤仁介 譯 監修, 1986, 『ロバ-ト 議事規則』, 로바-트 議事規則研究所가 있다. 이 책은 1981년판을 번역한 것이다.

75) 『독립신문』 1898년 5월 2일자 광고 등.

이른 시기에 소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 교과서로는 유치형(俞致衡, 1877~1934)이 강술한 『헌법』(1907)은 서문에서 일본의 헌법학자인 호즈미 야스카(穂積八束, 1860~1912)의 강의를 준거 채용(準據採用)했음을 밝히고 있다.⁷⁶⁾

그러나 김상연의 『헌법』(1908?)에서는 자신의 서문도 없고, 어떠한 책을 텍스트로 하여 강술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 도쿄전문학교의 강사였던 소에지마 기이치(副島義一, 1866~1947)의 『일본 제국헌법론(日本帝國憲法論)』(1905년, 3판 1909)을 요약하여 번역한 것이다.

조성구(趙聲九, 1881~1958)의 『헌법』(1907) 역시 강술한 책의 텍스트를 적지 않고 있는데, 일본인의 책을 모델로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⁷⁾ 조성구는 내부 민적과장과 경시를 역임했고, 후술하는 내부 경무국장이었던 마쓰이 시게루(松井茂)의 『경찰학(警察學)』(1909)을 국한문으로 번역하는 한편 여러 가지의 법률책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상의 책자들은 법관양성소나 보성전문 또는 양정의숙의 교재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며, 일반 국민의 헌법사상과 국가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도 있다.

또한 정인호(鄭寅琥)가 역술(譯述)한 『헌법요의(憲法要義)』(1908)는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의 전신인 도쿄전문학교 교수였던 다카타 사나에(高田早苗, 1860~1938)⁷⁸⁾의 동명의 저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역자의 자서(自序)는 다음과 같다.

76) 상세한 것은 國分典子, 1999, 「俞致衡と穂積八束: 朝鮮開化期における憲法教科書」, 『法學研究』(慶應大) 제72권 7호, 23~55쪽; 이창휘, 2001, 「유치형과 穂積八束의 헌법이론」,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77)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625~650쪽 참조.

78) 문헌은 早稻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編, 2002, 「高田早苗の總合的研究」; 佐藤能丸, 1991, 「近代日本と早稻田大學」, 早稻田大學出版部, 73~102쪽; 金孝全(講演), 「近代韓國憲法學의 潮流」

詩云他人有心을 予忖度之라 하니 予가 日本 法學博士 高田早苗의 所著호 憲法要義를 讀호니 日本人의 有心을 予有忖度이오 日本國의 有心을 吾國이 亦可忖度이오 間 評호 泰西各國의 有心을 參可忖度이라. 故로 予가 忘其淺見호고 國文漢字로 綜理詳釋호야 以公一世호노니 美哉旨哉라. 日本서 隨時變易을 先覺호고 憲法 七章 七十六條를 明治 二十二年 二月 十一日에 發布호얏스니 憲法을 布行호든 日은 곳 日本國民이 專制의 政治를 永脫호고 自由의 權利를 享有호는 日이라. 今日을 當호야 日本人의 所取主義가 約有 二種호니 外國을 對호야는 帝國主義오 內國에 在호야는 立憲主義라. 日本이 琉球國을 領호이 立憲의 效力이오 淸國을 戰勝호도 立憲의 效力이오 俄國을 擊退호도 立憲의 效力이오 雄峙亞東에 百度維新호이 總히 立憲의 效力이니 日本立憲이 不過 二十年 前史를 溯考컨뉘 日本人民의 程度가 現今 我韓人民의 程度에 不過호도다. (...) 憲法을 逐條說明호야 著作此編호 高田早苗는 日本人인 故로 日本臣民 (...) 德호고 擴充政學호야 保守權利호고 勉盡義務호야 憲法思想에 涵泳호고 憲法精神에 鼓舞호야 益益進歩호를 勸頌호얏스니 予於是編에 果有忖度矣로라.

이어서 제1장 서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번역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天下古今에 人이 隨時變易호야 堯舜의 時에 處호야는 堯舜의 道를 行호고 湯武의 時에 處호야는 湯武의 道를 行호는 것이 時宜를 從호야 行政호는 것이오 人이 人으로 더부러 交際에 我보담 勝호는 者의 行爲를 參酌奮發호야야 吾人도 他人보담 勝호는 人이 되는 것이오 國이 國으로 더부러 交際에 我보담 勝호는 國의 規模를 取舍

早稻田大學과 關聯하여」; *Waseda Proceedings of Comparative Law*, vol. 9(2006), pp. 205~214; 일본어 번역은 金亮完 譯, 2007, 「近代における韓國憲法學의 潮流: 早稻田大學との關わりを通じて」, 『比較法學』(早稻田大學) 第41卷 1號, 157~167쪽 참조.

益明⁸⁷여야 我國도 他國보담 勝⁸⁸ 國이 되는 故로 日本 法學博士 高田早苗가 自國의 憲法 七十六條를 逐條贊明⁸⁹여야 所著⁹⁰ 憲法要義를 今에 予가 先此辯論⁹¹하고 譯述如下⁹²호니 此書에 時宜⁹³ 要義가 人人의 腦中에 磅礴衝激⁹⁴하면 吾人도 他人보담 勝⁹⁵ 人이 되고 吾國도 他國보담 勝⁹⁶ 國이 될 것을 明目張膽⁹⁷호노라.

이처럼 『헌법요의』를 번역한 까닭은 사람마다 나보다 나은 자의 행위와 규모를 참작하고 분발하여 나보다 나은 사람, 타국보다 나은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애국심에서 번역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과서 이외의 문헌으로는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가 저술하고 김찬(金)이 번역한 『인권신설(人權新說)』(1908)⁷⁹⁾과, 같은 저자의 책을 유문상(劉文相)이 역술한 『강자(強者)의 권리경쟁론(權利競爭論)』(1908)⁸⁰⁾은 천부인권설을 부인한 것이다.⁸¹⁾ 일본에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⁸²⁾ 중국인 양계초(梁啓超)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가토의 논리가 강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개명정부의 역할을 강조

79) 이 두 책자는 2004년 관악사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으며, 여기에는 김효전의 해설이 붙어 있다. 역시 『人權新說』에는 원서의 제18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통감부의 검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열에 대해서는 정근식, 2005,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제51집, 44쪽 참조.

80) 가토는 이 책 제10장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면서 ‘宇內統一國’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블룬칠리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원서, 231쪽, 유문상 역, 192쪽). 가토의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른바 동아협동체론 내지 대동아공영권과 관련하여 재평가를 받고 1942년에 헌법학자인 田畑忍가 해제를 붙여 일본평론사에서 再刊되었다. 가토가 출간한 독문판 책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적 국가론의 대표자인 굼플로비츠(L. Gumplowicz)는 가토의 ‘宇內統一國’에 대해서 이상적인 空論이라고 비판했다. 『帝國日本の學知』 第1卷 4쪽.

81) 상세한 것은 김도형, 2007,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 양상에 관한 일 고찰: 『인권신설』과 『강자의 권리경쟁론』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제47집, 171~198쪽 참조.

82) Svamerud, Rune(2001), “The Notion of ‘Power’ and ‘Rights’ in Chinese Political Discourse,” in: Lackner, M., I. Amelung and J. Kurtz (eds.) (2001), *New Terms for New Ideas.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oston, Köln, Brill, p. 133.

한 초기의 입장이라면, 직접 수입된 가토의 논리는 절대군주를 정당화하는 후기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보는 견해⁸³⁾는 설득력이 있다. 이것은 독일의 자유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정치학자인 블룬칠리의 사상이 일본에서는 입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개명군주의 교과서로서 사용된 반면에, 중국의 양계초를 통해서는 봉건제와 구질서를 타파하는 혁명이론으로 탈바꿈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인권신설』은 한국의 책자에서 ‘인권’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예가 아닌가 한다.

자유와 평등과 관련해서는 상당(上黨) 유희식(劉鎬植)이 역술한 『국민자유진보론(國民自由進歩論)』(1908)이 양계초의 자유론 역술과 신민설(新民說) 제9절 「논자유(論自由)」(1902)와 제11절 「논진보(論進歩)」(1902)를 번역하고 합본한 것이다. 또한 역자를 알 수 없는 『남녀평권론(男女平權論)』(1908)은 스펜서(Herbert Spencer)의 *Social Statics*(1864)를 마쓰시마 고우(松島剛, 1854~1940)가 『사회평권론(社會平權論)』(1881)으로 번역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저서명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⁸⁴⁾ 또 김병만(金秉萬)이 역술한 『민권자치제(民權自治制)』(1909)는 일본의 시정촌(市町村) 제도에 관한 법규를 번역한 것이다.

기타 박승빈(朴勝彬, 1880~1943)⁸⁵⁾은 일본의 법령집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의 『헌법』에는 일본헌법과 황실전법, 국적법, 법례 그리고 재판소구성법이 수록되어 있다.⁸⁶⁾

83) 김도형, 2007,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 양상에 관한 일 고찰: 『인권신설』과 『강자의 권리경쟁론』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제47집, 196쪽.

84) 丸山眞男·加藤周一, 『翻譯と日本の近代』, 49~50쪽(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2000, 『번역과 근대의 일본』, 임성모 옮김, 107쪽).

85) 김효전, 2000, 「변호사 박승빈」, 『시민과 변호사』, 6월호, 79~85쪽 참조.

86)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6, 「근대 한국에 있어서 일본 헌법이론의 영향」, 『동아법학』 제38호, 1~38쪽 참조.

2) 행정법 관련 저작

행정법 책으로는 안국선이 역술한 『행정법(行政法) 上·下』(1908)⁸⁷⁾가 가장 방대한데, 역시 원전을 밝히지 않고 있다.⁸⁸⁾ 비교행정법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프랑크 J. 굿나우의 책⁸⁹⁾을 번역한 일본 책(『比較行政法全』, 1900, 浮田和民 역⁹⁰⁾을 텍스트로 한 것 같다.

또 조성구가 찬술(撰述)한 『지방행정론(地方行政論)』(1908)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내용으로 볼 때 일본 책을 모델로 하여 찬술한 것이다.

분명히 번역서임을 밝힌 것으로는 조성구가 번역한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866~1945)의 『경찰학(警察學)』(1909)이다. 이 책은 당시 내부 경무국장이던 마쓰이 시게루의 『일본경찰요론(日本警察要論)』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⁹¹⁾ 『황성신문』에는 이 책의 광고가 자주 나갔다.

3) 형법 관련 저작

조선 정부는 1905년 『형법대전』을 반포했으나, 한문으로 되어서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몇 가지의 기사를 살펴본다.

87) 2004년 관악사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88) 상세한 것은 김효진, 2003, 「안국선의 생애와 『행정법(상·하)』」, 『공법연구』 제31집 3호, 441~466쪽; 김효진, 2005, 「한국 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박사팔순기념논문집』, 146~173쪽 참조.

89) Goodnow, Frank J.(1893),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90) 이 책은 2006년 信山社에서 복각판(復刻版)이 발간되었다. 제1권 392쪽이며, 제3권은 352쪽이다.

91) 문헌은 松田利彦 監修 解説, 2000, 『松井茂博士記念文庫舊藏 韓國 '併合' 期警察資料』 全8卷, ゆまに書房; 松田利彦, 2005, 「韓國併合前夜のエジ ト警察制度調査: 韓國内部警務局長松井茂の構想に關して」, 『史林』(京都大學) 第83卷 1號, 71~103쪽 참조.

• 國文刑典請刊 李學宰 尹泰重 安秉瓚 氏等이 法部에 請願호되 夫 法律者는 頒行天下호야 使一般人民으로 熟讀講解호야 通曉律意케 호여야 人皆重國法而飭身行호야 自不抵冒호니 此乃教民之最大要路라. (….) 故로 本人等이 於是에 發起호고 資本을 風聚호야 爲先 刑法大典을 純國文으로 多數 譯刊호야 播諸國中호야 雖婦儒與僅라로 一臣其書에 便曉其義케 호면 二千萬人民이 皆將謂明法律호야 互相戒之勿犯호리니 (….) 法部에서 指令호되 刊行律書호야 使人民講習케 肅은 眞是盛世美舉라. 事甚嘉尙이기 特爲認許事라 호얏는디 安秉瓚氏는 法律卒業生이라 翻譯事務를 擔任호얏다더라.⁹²⁾

• 請刊律書 咸南視察 申箕善氏가 法部에 報告호얏스되 現接 咸興郡民 朱熙鍾 等 請願書內開伏念國家之制定法律者는 非欲懲惡而已라. 欲使民通知호야 不陷於刑辟也—니 刑法大全을 正宜家戶誦호야 雖愚夫愚婦라도 知其犯 罪處 律然後에 可 并生之壽域而但其編帙이 一郡에 不過一冊호야 使均閱故로 本人等이 合資設會에 多數印出호야 只以所入價로 廣佈各郡社里之間하짓사오니 特爲認許等 情이온바 律書廣佈가 雖爲美舉나 私民印刷를 有雖擅許이오니 查照指令하라 하얏더라.⁹³⁾

• 刑法頒訓 法部에서 平北 觀察府에 發訓호되 貴報內概에 刑法大全存당件은 己爲分送多郡호야 使之永守이을건과 各學校에도 一件式 出給호야 以備一課케 하며 印刷役費를 亦爲指教호야 自本所備誠等因인바 查此律書之預告講習호야 使人民으로 無敢或犯케 肅이 雖是美舉나 刑法大全之儲置가 無幾호야 無可加撥이 어니와 刑法大全許賣廣告가 已揭新聞호니 量宜購覽호라.⁹⁴⁾

92) 『황성신문』 1906년 3월 10일자.

93)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1일자.

94)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22일자.

• 刑法譯刊 金教珏 李正世 李容赫 三氏가 刑法大全을 以國文으로 翻譯發刊
 ㅎ야 京鄕의 愚夫愚婦라도 便利購覽ㅎ야 確知其法律條例ㅎ고 漸進發達ㅎ야 無至
 犯過ㅎ기 爲ㅎ야 方欲設刊이나 至於法律하야는 私自刊行이 似可違規인 故로 特
 爲認許ㅎ라고 法部에 請願ㅎ았다더라.⁹⁵⁾

그 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통감부에서 법률을 기초하고 내
 각에서 의결하는 형식을 취하여 한국의 자주적인 입법권은 이미 상실되었다.⁹⁶⁾

근대 한국의 최초의 체계적인 형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장도(張燾)의
 『형법총론(刑法總論)』(1907)에서는 일본의 형법학자인 오카타 아사타로(岡田
 朝太郎, 1868~1936)의 저서를 토대로 저술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⁹⁷⁾

장도와 함께 일본 주오(中央)대학의 전신인 도쿄법학원⁹⁸⁾에서 공부한 이
 면우(李冕宇, 1878~1925)도 『형법각론(刑法各論)』(1907?)을 강술했으며, 이정
 세(李正世)가 번역한 『형법대전(刑法大典) 上·下』(1908)도 있으나 별로 알려
 진 바가 없다.

한일합방 이후에도 몇 가지의 형법 관련 저작이 출간되었는데, 특히 양정
 의숙 출신의 김계근(金葵根)은 『형법통론(刑法通論)』(1913)이란 대저를 출간
 했다. 저자는 1908년 양정의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곧바로 모교의 강사

95)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0일자.

96) 상세한 것은 김효진, 2006,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세종출판사, 334~335쪽 참조.

97) 상세한 것은 김효진, 2000, 「장도의 생애와 업적」, 『시민과 변호사』 7월호, 108~116쪽; 허일태, 2008, 「장도(張燾)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인권과 정의』 4월호, 127~143쪽 참조.

98) 일본의 주오(中央)대학은 1885년 도쿄 간다 니시키초(神田錦町)에 英吉利法律學校로서 창립
 되었으며, 1889년 교명을 東京法學院으로 개칭했으며, 1903년에는 전문학교령에 따라서 東京
 法學院大學으로 개칭했으며, 1905년에 다시 中央大學으로 개칭하고 경제학과를 신설했다.
 1920년 대학령에 의한 中央大學의 설립 인가를 받아 법학부, 경제학부, 상학부, 대학원, 대학
 예과를 설치했다.

로 채용된 사람으로 같은 해 6월에 열린 법학협회의 토론회에서는 채권법의
 문제에 대해서 석진형과 토론하기도 했다.⁹⁹⁾ 이 책의 광고에서는 “그 법리(法
 理)의 정확함과 학설의 신기(神奇)함과 주각(註脚)의 상세함과 조문의 창명(彰
 明)함”¹⁰⁰⁾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과 관련하여 형법 분야에서는 법부 고문관을 지낸 크레마지(Laurent
 Crémazy, 金雅始, 1837~1910)가 『대한형법』을 “Le Code Pénal de la Corée”
 (1904)¹⁰¹⁾라는 제목의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유럽의 학계에 보고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책은 한국의 법을 서구어로 소개한 최초의 저작이며,
 또한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양법을 서술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책
 이다. 참고로 이 책의 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일부 소개하기로 한다.

... 『대한형법』은 중국법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 작성된 한국법인데, 그 모델
 로서 형법과 私法の 규정, 禮典과 禮規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1901년 5월 법부대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된 자료와 조언과 더불어 새 법령집을 번역할 위임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완수했다. 대한형법은 그간 地方方法을 개정할 임무가 주어진
 내각에서 2년 이래 심사 중에 있다(132~134쪽 참조). 바로 이 형법이 아직 황제
 의 재가를 얻지 못했는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출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법학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소개함으로써
 중국 법학을 밝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²⁾

99) 『황성신문』 1908년 6월 18일자.

100) 『매일신보』 1913년 5월 22일자.

101) 2004년 관악사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102) 『대한형법』 불역판의 서문 전체는 최종고, 1982,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 박영사, 185~186
 쪽 참조.

끝으로 조선교구장 뮈텔(Mutel) 주교와 법부의 한국인 관리 방승헌과 조창호에게 감사하는 뜻을 적고 있다.

또한 크레마지는 한국을 떠난 뒤에도 『『대한형법』의 보충편(Complémentaire du Code Pénal de la Corée)』(1906, Paris)을 출판하기도 했다.

4) 민사법 관련 저작

민사법 분야의 저작은 민법과 상법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¹⁰³⁾

먼저 민법총론은 신우선(申佑善, 1872~?)¹⁰⁴⁾의 『민법총론(民法總論)』(1907)¹⁰⁵⁾이 가장 체계적인 저작이며, 저자는 관비 유학생으로 경응의숙 보통과와 고등과를 졸업하고 1900년 7월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그가 쓴 이력서에서는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귀국 후 법관양성소 교관을 역임하고 한일합방 후에는 충남 연산과 아산 등지의 군수를 지냈다.

다음에 물권법은 유치형의 『물권법(物權法) 제1부』(1907)¹⁰⁶⁾와 동 제2부¹⁰⁷⁾가 있다. 양정의숙에서 간행한 것으로 국한문으로 되어 있다. 박만서(朴晩緒, 1897~?)의 『물권법 제2부』(1908?)¹⁰⁸⁾ 류동작(柳東作, 1877~1910)¹⁰⁹⁾의 『물권법』도 발간되었다. 저자는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위원을 역임했으며, 1908년 국채보상운동 의연금에 관한 양기탁의 재판사에 일본인 판사와 함께 관여했다. 기타 발간연도를 알 수 없는 보성전문 출

103) 민사법 분야에 관한 간단한 해제는 최종고, 1990, 『한국법학사』, 박영사 299쪽 이하 참조.

104) 『朝鮮紳士名鑑』, 282쪽 참조.

105) 국회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06) 서강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소장.

107) 고려대학교 소장.

108) 고려대학교 소장.

109) 류동작 씨 추도회 특별광고, 『대한민보』 1910년 2월 25일자 및 동 2월 26일자 참조.

신의 이항중(李恒鍾)의 『물권법 제2부』가 있다.

채권법에서는 석진형의 『채권법(債權法)』(1907), 조성구의 『채권법 제2부(甲)』(1908), 같은 저자의 『채권법 제3부』(1908년경), 같은 저자의 『채권법강의안(債權法講義案) 제2부』¹¹⁰⁾가 있다.

기타 박만서(朴晩緒)의 『친족법론(親族法論, 親子法)』과 『상속법(相續法)』이 있다.

상사법의 분야에서는 이면우¹¹¹⁾의 『상법총론(商法總論)』(1907)과 보성전문 출신의 주정균(朱定均)의 『상법총론』(1907), 그리고 김상연(金祥演)의 『상법총론』(1907)이 있다. 이 책은 『상법요의(商法要義)』란 제목도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또한 장헌식(張憲植)의 『상행위(商行為)』(1907), 안국선의 『상행위법(商行為法)』(1907), 김상연의 『회사법(會社法)』(1907), 이면우의 『회사법』(1908) 등이 있으며, 이년응(李年應)이 번역한 『회사법강요(會社法綱要) 上·下』(1907)는 구한말에 나온 상법에 관한 저작 중 가장 방대한 것이다.

그 밖에 신우선의 『어험법론(魚驗法論)』(1907)¹¹²⁾과 유치형이 강술한 『해상법(海商法)』(연도 미상)이 있다.

5) 소송법 기타 문헌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송제도는 갑오경장 이후인 1895년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민형소송규정(民刑訴訟規程)이 제정된 것에서 비롯한다. 통감부의 설치 이래 일본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10) 고려대학교 영인본 소장.

111)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0, 「이면우의 생애와 저작 », 『시민과 변호사』, 8월호, 40~47쪽 참조.

112) 일본 문헌으로는 松波仁一郎, 1906, 「朝鮮手形法」, 『早稻田學報』 제128호, 6~11쪽 참조.

• 평리원 한성부 량 재판소에서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일본 법률을 모범할 터인데 지금 있는 관리들은 일본 소송법을 해득하는 자가 업기로 다 태거하고 일본 류학생 중 법률 졸업으로 슈용한다니 일본 아니면 대한은 법률도 업을까.¹¹³⁾

그 후 일제시대에는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依用)되기도 했다.¹¹⁴⁾

소송법에 관한 문헌으로는 홍재기(洪在祺)의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1907년경), 최진(崔鎭)이 강술한 『민사소송법 제1편』(1908년경), 주정균이 강술한 『민사소송법』(필사본) 등이 있다.

일본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는 다나카 마사치카(田中正身)·시이 기오우(四位義王)가 공저로 펴낸 것을 이흥수(李興洙)가 번역한 『한국민형소송주해(韓國民刑訴訟註解)』(1909)가 대표적인 것이다. 저자인 다나카는 재판소 서기장 출신으로 1909년 공주군(公州區) 재판소 판사이며, 시이는 1908년 재판소 서기로 출발하여 1910년 인천구 재판소 판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1932년 전주지방법원을 퇴직한 사람이다. 역자인 이흥수 역시 경성공소원 서기이다. 이 책에는 조선통감부 시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지시로 식민지 형사사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법무 차관을 지낸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 1853~1948)¹¹⁵⁾의 서문이 붙어 있다. 식민지 민사사법의 기초는 우메 겐지로(梅謙次郎, 1860~1910)가 관습조사 등을 한 바 있다.¹¹⁶⁾

113)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6일자.

114) 호문혁, 2004, 「독일 민사소송법의 계수 120년의 사적 고찰」, *NEWSLETTER(SNU BK LAW 21)*, vol. 4, No. 1, pp. 60~61.

15) 상세한 것은 伊藤隆·季武嘉也, 2005,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2』, 吉川弘文館, 88~89쪽, 『國立公文書館 所藏 樞密院高等官履歷 第5卷』, 1999, 東京大學出版會, 401~425쪽 참조.

116) 상세한 것은 이영미 편역, 2007, 「근대 한국법과 梅謙次郎」, 『동아법학』 제39호, 289~380쪽 참조.

기타 박만서의 『파산법(破産法)』(1910)과 유치형의 『증거법(證據法)』(1910) 등이 있다.

법의학 서적으로는 『증수(增修) 한문무원록대전(漢文無冤錄大全)』(1907)이 있다. 이 책은 원(元)나라 왕여(王與, 1261~1346)의 저작으로 1308년(혹은 1335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과 일본 등지에 전파되고 법의학 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되었다.¹¹⁷⁾

법전의 번역은 박승빈(朴勝彬)이 번역한 『헌법(憲法) 일본육법전서(日本六法全書) 제1권(第一卷)』(1909)이 있다.

사전류로는 채기두(蔡基斗)·한상우(韓相愚) 외 4명이 펴낸 『법률경제사의 통해(法律經濟辭義通解)』(1908)가 있는데, 편자인 채기두는 1904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서 1909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다.¹¹⁸⁾ 일제시대에는 일진회 사찰원을 지냈다.¹¹⁹⁾

여기서 보듯이 조성구, 주정균, 이항중, 김계근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이 일본책을 토대로 번역, 강술(講述), 편술(編述) 등의 형태로 법학 교과서를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률 문헌의 번역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외에도 중국의 법제와 법학을 우리 법률과 관련하여 번역하거나 편찬하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소개 내지는 보도되고 있다.

(1) 『황명교령』 학부에서는 명나라 때의 장정과 규칙을 발간했다는 보도가

117) 최근의 번역서로는 송철의·이현희·장윤희·황문환 역주, 2004, 『증수 무원록 언해』,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호 옮김, 2003,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사계절 참조.

118) 『대한홍학보』 제5호, 1909년 당시 27세로 이 잡지에 사진이 실려 있다.

119) 內田良平, 『朝鮮統治問題について』, 146쪽.

있다.¹²⁰⁾

(2) 신재영(申載永)·경훈(慶勳) 공저, 『법률유취성편(法律類聚成編)』, 법부(法部)(1899).

이 책의 편자인 신재영과 경훈은 근대적인 법학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며 전통적인 관료로서 종래의 법률과 신식 법률을 함께 공부한 사람이다.¹²¹⁾

이 책의 발간에 관한 『독립신문』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 큰 사업 신재영씨와 경훈씨가 대한 법률이 혼잡하고 편질이 호변하야 관민이 상고하고 빙거하기가 극난홀뿐더러 법률에 몽마하야 참호하야 현금 쓰는 것 돈 부집하야 세 권을 돈들었는데 책 일홈은 법률유취라 인쇄하야 광포하야량으로 법부에 청원했다는데 그 규모가 대단 정요하야 헌법 보와도 요연홀지라 우리는 랑씨의 위국 호민호는 것을 치하호노라.¹²²⁾

120) 『대국신문』 1898년 9월 28일자.

121) 신재영은 1883년 일본에 파견되어 해관사무와 정치과를 배우고 귀국하여 1885년 해관에 근무하다가 1895년 법부 검사국장, 1897년 법률기초위원, 1899년 법무 참서관, 1900년 군법기초위원, 1905년 육군법원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대한제국 관원 이력서』, 608쪽·904쪽). 경훈은 1882년 황태자 가례(嘉禮) 때 증광초시(增廣初試)에 합격하였으나, 1886년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투옥되고 1892년에는 평북 용천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1899년 법무 법률기초위원으로 형법과 민법을 기초하였으나 1901년 해임되고 1906년 군부 주사로 임명되었다(『대한제국 관원 이력서』, 567쪽). 1907년에는 변호사 이용성·황진국·안치운의 연합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이기도 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9일자). 1910년 단양 군수, 1910년 제천 군수, 1913~1915년 괴산 군수, 1915~1919년 제천 군수 역임. 청주 경씨 족보(1983), 상권 414쪽과 중권 281쪽에는 “무신년(1868) 9월 6일생, 기사년(1929) 5월 9일 졸”로 적혀 있다. 본인의 자필 이력서에는 개국 471년(1862) 9월 29일 출생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족보의 기사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연구』, 154쪽에서는 1864년생, 『朝鮮人名資料辭典』(2001)에는 개국 462년(1853)년생으로 되어 있다. 기타 안용식 편, 2001, 『일제 지방관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참조.

122) 『독립신문』 1899년 4월 12일자.

• 법률 수업 법무 참서관 신지영씨와 진수 경훈씨가 대명률 강해(講解) 향부례(鄕附例)와 당부례(唐附例) 합 세질 칙과 대면회통을 참호하야 합 두권 책을 더 붙쳐서 판박여 반포호즈고 청원호 고로 법무 대신이 그 초본을 정부회의에 제출호 다더라.¹²³⁾

이와 같이 당시에는 법령이 완비되지 못하여 개인이 사비로 출판하는 실정이며, 더구나 전통적인 중국법과 그 영향을 받은 한국법,¹²⁴⁾ 그리고 서구식의 근대법이 현행법으로서 공존하는 실정이었다. 즉 대명률, 향부례, 당부례와 같은 중국법의 전통 위에 대전회통과 같은 한국법, 그리고 재판소구성법과 같은 외관적인 근대법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법령의 체계는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도 정비되지 못했다.

그 밖에 개인이 법령집을 발간하거나 정부에서 출간한 예를 신문기사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추려 본다.

• 刑法譯佈 李學宰 尹泰重 安秉瓚 氏等이 發起호고 資本을 鳩聚호여 刑法大全을 純國文으로 多數 譯刊호야 廣佈國中호야 雖孺孺與대라도 一覽其書에 便曉其義케 호야 使全國人民으로 無有不學法律者호야 自不陷罪에 馴成美俗케 호겠다고 認許를 法部에 請願호바 該部에서 指令호되 刊行律書호야 使人民講習케 호이 眞是盛美舉라 事甚嘉向이이기 特爲認許事 히앗는디 安秉瓚氏는 既往에 法律學卒業生인디 今此 刑法大全 翻譯刊布의 熱心호는거시 實로 開導人民의 好箇方針이니 吾齊는 其剋日成書호야 快觀實效호를 十分企祝호노라.¹²⁵⁾

123) 『독립신문』 1899년 5월 18일자.

124) 예컨대 楊鴻烈, 民國 64年(1975年), 『中國法律在東亞諸國之影響』, 商務印書館 참조.

125)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10일자.

• 刑法譯刊 金教珏 李正世 李容赫 三氏が 刑法大全을 以國文으로 翻譯發刊
 ㅎ야 京鄕의 愚夫愚婦라도 便利購覽ㅎ야 確至知其法律條例ㅎ고 漸進發達ㅎ야 無
 至犯過ㅎ기 爲ㅎ야 方欲 設刊이나 至於法律ㅎ야는 私自刊行이 似可違規인 故로
 特爲認許ㅎ라고 法部에 請願ㅎ앗다더라.¹²⁶⁾

• 法律註釋 金宗漢 李應翼 兩氏が 現行法律을 註釋ㅎ야 一般人民으로 法律
 意義를 曉解케 ㅎ다는데 其 費用은 各 贊成員 諸氏에게 請捐補用ㅎ고 伊後 註釋ㅎ
 冊子로 報給ㅎ다더라.¹²⁷⁾

• 地方費關係法 內部에서 地方費關係法令이라는 冊子를 刊出ㅎ야 各 道府郡
 及 各 警察署 及 理事廳에 一部式을 日昨 配付ㅎ앗다더라.¹²⁸⁾

• 特許冊子分給 昨日 統監府 特許局에서 特許出願節次解說 五百冊과 意匠
 登錄出願節次解說 二百冊과 商票登錄法 五百冊과 實用新案出願節次 五百冊을
 鍾路 商業會議所에 送致ㅎ고 一般實業家에게 頒給ㅎ라 ㅎ앗다더라.¹²⁹⁾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현행 법률을 국한문 또
 는 순한글로 번역하여 발간하기도 했다.

법률이 어려운 한문이나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
 하지 못하는 것은 고급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그
 리하여 헤겔도 일찍이 법률이 전문 학술서나 판례집 같은 학술자료 속에 파

126)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0일자.

127) 『대한민보』 1909년 7월 20일자.

128) 『황성신문』 1910년 3월 18일자.

129) 『황성신문』 1910년 3월 19일자.

묻히게 되고 더구나 외국어까지 덮어씌워 전문학자만이 현행법의 지식에 접
 근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
 스야말로 위대한 정의의 행위를 한 지배자라고 칭송하고 있다.¹³⁰⁾ 또한 베카
 리아도 『범죄와 형벌』 속에서 유럽 모든 나라의 법률은 거의 대부분 대중이
 알아볼 수 없는 사어(死語)로 쓰인 점을 비난하며,¹³¹⁾ 오늘날의 미국 연방대
 법원의 판결문도 미국인들은 ‘another language’라고 불평하고 있다.

5. 『국가학(國家學)』 관련 문헌

국가학과 관련되는 문헌의 번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나진(羅璿)·김상연(金祥演) 역술, 『국가학』(1906)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체계적인 국가학 문헌이다. 그런데 역자는 번역의 텍
 스트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또 역자의 서문도 없어서 무슨 책을 근거로 만
 들었는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고쿠분 노리코(國分
 典子) 교수에 의해서 역서 제15장까지는 다카타 사나에(高田早苗)의 『국가학
 원리(國家學原理)』(1905)를 초역했고, 제16장에서 제21장까지의 6장은 독일인
 콘라드 보른하크(Conrad Bornhak, 1861~1944)¹³²⁾의 “Allgemeine Staatslehre

130) Hegel, G. W. F.(1970),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Suhrkamp(헤겔, 2008, 『법철학』, 임석진 옮김, 한길사, 398쪽).

131) Beccaria, C.(1764), *Dei Delitti e delle Penet*(C. 베카리아, 2006, 『범죄와 형벌』, 한인섭 역, 박
 영사, C. 베카리아, 1995, 『범죄와 형벌』, 김봉도 역, 박문각) 참조.

132) 보른하크에 관하여는 김효전, 1996, 『서양 헌법이론의 초기 수용』, 철학과현실사, 264~268쪽,
 일본 문헌으로는 山本浩三 譯, 1961, 『憲法の系譜』, 法律文化社 참조.

(1896, 2. Aufl., 1909)를 기쿠치 하시다(菊地駒治)가 번역한 『일반국가론(一般國家論)』(1903)¹³³⁾과 거의 같다는 사실을 필자에게 알려왔다.

이 책은 1986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으며,¹³⁴⁾ 또 여기에 필자가 상세한 해설을 첨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후에 발견한 관련 참고 문헌만을 소개하기로 한다.¹³⁵⁾

2) 『만세보』 연재, 『국가학』(1906)

『만세보』는 1906년 9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연재한 것이다. 원전의 출처나 역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아국제일학문가(我國第一學問家)의 번역’이라고 적고 있다. 중국 문헌을 한국식 한자로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 『만세보』를 창간한 이인직(李人植, 1862~1916)이 일본 도쿄정치학교(東京政治學校)에서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 1859~1946)¹³⁶⁾에게 국가학과 신문학 등을 배운 사실과 관련하여 연구할 테마라고 생각한다.¹³⁷⁾

전문은 김효전에 의해서 『동아법학』(1988) 제7호, 229~380쪽에 번역되었으며, 2004년 관악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133) 이 책은 1987년 민족문화에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134) 1986년에는 부산의 민족문화에서, 2004년에는 서울의 관악사에서 각각 발간했다.

135)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494~547쪽 참조. 일본 문헌은 荻原 隆, 1983, 『『國家學原理』におけるその國家思想(高田早苗)』, 『近代日本と早稲田の思想群像 II』, 早大出版部, 1~33쪽; 内田滿, 2000, 『早稲田政治學の先達 高田早苗: 國會開設期に果たした役割を中心に』, 『早政』 제340호 참조.

136) 상세한 것은 姜克實, 2003, 『浮田和民の思想史的研究: 倫理的帝國主義の形成』, 不二出版 참조.

137) 윤승준, 2004, 『국초 이인직의 일본 경험과 신소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교류』, 국학자료원, 135~172쪽 참조.

3) 블룬칠리(伯倫知理), 안중화(安鍾和) 역, 『국가학강령(國家學綱領)』(1907)

이 책은 스위스 출신의 독일 공법학자인 블룬칠리(J. C. Bluntschli, 伯倫知理, 1808~1881)의 『일반 국법학(Allgemeines Staatsrecht)』 일부를 중국인 양계초가 한역한 것을 다시 국한문으로 증역한 것이다. 겉표지에 ‘政治學小叢書第一’이라고 한 것은 독일 블룬칠리의 저서를 중국인 飲水室主人이 한역한 『국가학강령(國家學綱領, 정치학소총서지일(政治學小叢書之一))』(1902, 上海: 廣智書局)과 동일하다.¹³⁸⁾

블룬칠리의 이름은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의 번역으로, 중국에서는 양계초에 의해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한국에서는 이들 두 문헌에 의해서 널리 전파되고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¹³⁹⁾

양계초는 일본에서 발간된 伯崙知理 著, 吾妻兵治 譯, 『국가학』(1899, 善隣譯書館)의 한역본을 텍스트로 사용하고 가토의 역서를 참고로 했을 것이다.

4) 김상연(金祥演) 찬술, 『국법학(國法學)』(1907)

이 책 역시 찬술자(撰述者)의 서문도 없고 더구나 어떤 책을 근거로 저술한 것인지도 알리지 않고 있다. 일본의 실정 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찬술자가 기왕에도 일본 책을 역술 또는 편술한 점을 볼 때 일본책을 토대로 만든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138) 이 책은 廣東 中山大學에 소장하고 있다.

139) 상세한 것은 安世舟, 1975, 『明治初期におけるドイツ國家思想の受容に關する一考察: 加藤弘之を中心として』, 日本政治學會年報 『日本における西歐政治思想』, 113~156쪽; 우남숙, 2000, 『한국 근대 국가론의 이론적 원형에 관한 연구: 블룬칠리와 양계초의 유기체 국가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집 1호, 113~145쪽 참조.

5) 블룬칠리(伯倫知理), 정인호(鄭寅琥) 역술, 『국가사상학(國家思想學)』(1908)

이 책은 본문 22쪽과 부록 「각국헌법약부(各國憲法略付)」 2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는 서문에서 “德國의 大政治家 伯倫知理가 著述한 國家學에…” 운운하고 있으나, 중국인 양계초가 번역한 『국가사상변천이동론(國家思想變遷異同論)』(1901)과 『각국헌법이동론(各國憲法異同論)』(1899)을 다시 중역한 것이다.

6) 기타

그 밖에 국가학과 관련하여 번역된 문헌으로는 안국선 편술, 『정치원론(政治原論)』(1907)은 이치지마 겐키치(市島謙吉)의 동명의 저작(1889)이며,¹⁴⁰⁾ 안국선의 『외교통의(外交通義) 上·下』(1907) 역시 나가오카 하루카즈(長岡春一, 1877~1949)의 같은 책이며, 변영만(卞榮晩, 1889~1954) 역술, 『21세기의 대참극 제국주의(二十世紀之大慘劇 帝國主義)』(1908)¹⁴¹⁾는 일본 博文館에서 발간하는 잡지 『태양(太陽)』 제14권 제9호(1908)의 임시중간 『시대의 추세(時代之趨勢)』에 수록된 「제국주의」(92~129쪽)를 근거로 역술하고, 간혹 미국의 정치학자인 라인슈(Paul Samuel Reinsch, 1870~1923)의 『세계의 정치(世界之政治)』¹⁴²⁾를 참고하여 번역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⁴³⁾ 이 책은 일본 책에만 의존하지

140) 상세한 것은 김효전, 2000, 「안국선 편술 ‘정치원론’의 원류», 『헌법학연구』 제6권 1호, 9~50쪽,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548~624쪽에 재수록.

141) 일본의 사회주의자 고도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의 『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1901·2004, 岩波)와 같은 역사의식을 공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42) 라인슈의 『제국주의론』의 원서는 *World Politic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1900)이며, 일본어 번역은 高田早苗抄 譯(1901, 東京專門學校出版部)이 있다. 해제는 『帝國日本の學知』 第1卷, 5쪽 참조.

143) 상세한 것은 최기영, 1993, 「한말 지식인의 반제국주의론: 변영만을 중심으로」, 『국가사관논총』

않고 미국의 책도 참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를 명확히 밝힌 점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구한말의 지식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양계초 저, 전항기(全恒基) 역, 『음빙실자유서(飲氷室自由書)』(1908)를 비롯하여, 그의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1907, 신채호 역술),¹⁴⁴⁾ 『근세제일여걸 라난부인전(近世第一女傑 羅蘭婦人傳)』(1907), 『청국무술정변기(淸國戊戌政變記)』(1908), 『중국혼(中國魂)』(1908),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1908), 『갈소사전(曷蘇士傳)』(1907) 등 대부분이 번역되었다.

또 미국인 사밀가덕(斯密哥德) 저, 변영만 역의, 『세계삼괴물(世界三怪物)』(1908), 프랑스의 에밀 라이스(愛彌兒拉) 원저, 이채우(李琛雨) 역술, 『애국정신(愛國精神)』(1908), 일본 民友社 편, 이채우 역, 『19세기구주문명진화론(十九世紀歐洲文明進化論)』(1908), 황윤덕(黃潤德) 역술, 『비사맥전(比斯麥傳)』(全)(1907), 김병제(金丙濟) 역술, 『사회승람(社會勝覽)』(1908), 이해조(李海朝) 역, 『화성돈전(華盛頓傳)』(1908), 나카자토 야노스케(中里彌之助, 1885~1944) 저, 현공렴(玄公廉) 역, 『미국고대통령(美國故大統領) 쉘퍼이트전』(국문, 1908), 『미국명군언행록(美國名君言行錄)』(1907) 등이 있다.

기타 정치소설로서 중국인 정철관(鄭哲貫) 역, 박은식(朴殷植) 역술, 『서사 건국지(瑞士建國誌)』(1907)¹⁴⁵⁾와, 같은 중국인 진천화(陳天華, 1875~1905) 저,

제47집, 115~137쪽; 최기영, 2003, 『한국 근대 계몽사상연구』, 일조각, 56~91쪽; 최기영, 2006, 『1910년대 卞榮晩의 해외행적』,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제55집, 191~225쪽 참조.

144) 『伊太利建國三傑傳』의 새 번역은 량치차오(梁啓超)(2001), 『이태리 건국 삼걸전, 지식의 풍경』, 신채호 번역, 류준범 · 장문석 현대어 옮김. 이 책에는 원문이 영인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정환국, 2004, 「근대 계몽기 역사 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越南亡國史』와 『伊太利建國三傑傳』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48집, 1~32쪽; 한기형 외 지음, 2006, 「근대어·근대 매체·근대 문학: 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제55집, 151~181쪽에 재수록.

145)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8일자는 壽書(투고)란에 謙谷生, 『瑞士建國誌譯述序』를 전면에

김필수(金弼秀, 1872~1948) 역, 『경세중(警世鍾)』(1904), 일본인 야노 후미오(矢野文雄龍溪, 1851~1931) 역술, 현공립 역, 『경국미담(經國美談)』(1909)이 있다. 『경국미담』은 일본에서 1883~1884년에 출판되었으며, 그리스 역사를 소재로 한 정치소설이다.¹⁴⁶⁾ 이처럼 위인전 내지 애국심을 강조하는 번역서들이 발견된다.

또한 계몽 잡지와 전문 학술지에도 여러 가지 저서의 일부와 논설 등이 많이 번역되었다. 법학이나 국가학에 관한 번역 문헌의 목록은 이미 필자의 『서양 헌법이론의 초기수용』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다. 다만, 『조양보(朝陽報)』 제11호(1906)의 광고¹⁴⁷⁾에 의하면 ‘저작’과 ‘역술’을 구별하여 편집을 하고 있는 점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흥미롭다. 예컨대 역술에는 보호국론(保護國論), 멸국신법론(滅國新法論), 정치원론(政治原論), 태서교육사(泰西教育史), 대한명신록(大韓名臣錄), 갈소사전(葛蘇士傳), 미국대통령(米國大統領), 비스마룩구, 애국정신(愛國精神), 해외잡록(海外雜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에 연재한 번역으로는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의 일부가 ‘노사(盧梭)’, ‘민약(民約)’이란 제목으로 1909년 8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소개되었다. 여기에도 번역자와 텍스트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 나카에 조민(中江兆民篤介, 1847~1901)¹⁴⁸⁾이 『민약역해(民約譯解)』란 제목으로 한역하고 해설을 첨부한 권1(卷之一)을 국한문으로 옮긴 것이다.¹⁴⁹⁾

개재하기도 했다.

146) 春陽堂版 『明治大正文學全集』第1卷에 수록.

147) 『황성신문』 1906년 12월 12일자.

148) 나카에 조민의 한국어 번역은, 『삼취인경 문답(三醉人經綸問答)』, 2005,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소명출판.

149) 전문과 해설은 김효전, 2006,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1005~1020쪽에 재수록했다.

6. 결론

이상으로 법학과 국가학 문헌을 소재로 하여 근대한국에서의 번역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첫째, 근대 한국에서 발간된 서적의 종류를 전부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문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 시기에 발간된 교과서류는 대체로 700~1000종 정도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¹⁵⁰⁾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그중 수적으로는 기독교 서적과 문학 서적이 가장 많으며, 법학과 국가학 관련 문헌은 약 100종류를 헤아린다.

둘째, 근대 한국에서의 번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국가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민간인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문명개화를 촉진하는 매체로서의 과정이 신문보다 열세에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지대했다.

셋째, 법학 서적의 경우는 시무의 학문으로서 실제의 수요에 부응하여 단시일 내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다.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 관리의 채용시험 과목으로서 정치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과목도 서서히 인기 있는 과목이 되고 있었다.

넷째,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전후로 하여 역사와 전기물 내지는 구국 영웅전이 급박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많이 발간되고 읽히게 되었다.

다섯째, 법학 서적의 경우 일본 유학생에 의해서 자신이 공부한 일본의 법률 서적이 텍스트로서 널리 사용되고 번역 또는 강술의 형태로 도입 또는 소개되었다. 국가학이나 일부 문헌에서는 양계초의 저술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나 같은 문법구조를 가진 일본어에 의한 번역이 쉽게 전파되었다.

150) 백순재, 1970, 『개화기의 한국서지』, 『동방학지』 제11집, 198쪽.

여섯째, 번역의 문제는 외국어교육 내지는 외국어 사전편찬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용적인 면에서 통역의 역할¹⁵¹⁾도 상세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외국 문헌의 번역은 블룬칠리의 국가사상이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에 의해서 천황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반면에, 중국의 양계초에게는 낡은 봉건제와 전통을 파괴하는 혁명이론으로 둔갑하기도 하며, 한국에서처럼 계몽이론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여하튼 원전을 번역한 후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나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번역과 한국의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법학과 국가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실증적이며 정치하게 분석한 책이 나와서 상호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51) 통역은 外部의 공식적인 외교활동으로부터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으로부터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한 중요한 문제이며, 체계적으로 연구할 과제의 하나이다. 법원과 관련된 기사를 본다.
예컨대 재판소번역관보 시험에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그것도 일본어 한 과목만을 시험보고, 마침내 각 경찰서에서는 집집마다 어학 공부하는 사람을 조사할 정도로 조선인의 일상생활은 통감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된다(『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8일자).
• 無譯困難 今番 新官制 頒布 以後에 各道 通譯官補가 廢止됨으로 各 裁判所에서는 外國人 交涉上에 通譯이 無함으로 困難하다고 法部에 報告가 遷至한다더라(『황성신문』 1908년 1월 21일자).

1. 기본 자료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태국신문』, 『만세보』, 『한성순보』, 『황성신문』 등.

2. 단행본

김병철, 1975, 『한국 근대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김봉희, 1999,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효진, 2006,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 세종출판사.

김효진, 2000,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김효진, 1996,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철학과현실사.

이기준, 1985, 『한말 서구경제학도입사』, 일조각.

이진호, 1996, 『한국성서백년사』, 전2권, 대한기독교서회.

三橋猛雄 編, 1966, 『明治前期思想史文獻』, 明治堂書店.

西村捨也, 1968, 『明治時代法律書解題』, 酒井書店.

『明治文化全集 法律, 政治篇』, 1968, 日本評論社.

丸山眞男 · 加藤周一, 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新書(『번역과 일본의 근대』, 2000, 임성모 옮김, 이산).

柳父章, 1982,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번역어성립사정』, 2003, 서혜영 옮김, 일빛).

石塚正英, 柴田隆行 監修, 2003, 『哲學 · 思想翻譯語辭典』, 論創社.

古田裕清, 2004, 『翻譯語としての日本の法律用語』, 中央大學出版社.

Masini, Federico(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Berkeley(『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중국어 어휘의 형성과 국가어의 발전 1840~1898』, 2005, 이정재 옮김, 소명출판).

Lackner, Michael, Iwo Amelung and Joachim Kurtz (eds.)(2001), *New Terms for*

New Ideas.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oston, Köln, Brill.

3. 논문

- 고덕환, 1984, 「개화세력사회의 출판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도형, 2007,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 양상에 관한 일 고찰: 『인권신설』과 『강자의 권리쟁론』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제47집, 171~198쪽.
- 김봉희, 2006, 「개화기 번역서 연구」, 홍선표 외, 『근대의 첫경험: 개화기 일상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55~127쪽.
- 정선태, 2006, 「근대 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 매체·근대 문학: 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대동문화연구원(성균관대학교), 43~66쪽.
- 정환국, 2004, 「근대 계몽기 역사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越南亡國史』와 『伊太利建國三傑傳』의 경우」,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제48집, 1~32쪽, 한기형 외, 위의 책, 151~182쪽에 재수록.
- 水田義雄, 1979, 「翻譯による法思想の攝取」, 野田良之, 碧海純一 編集, 『近代日本法思想史』, 有斐閣, 215~223쪽.
- 安宇植, 1982, 「翻譯から見た朝鮮の近代」, 雑誌 『文學』 編集部編 翻譯, 岩波書店, 140쪽 이하.
- 雄月之(Xiong Yuezhi), 1989, 「江南製造局翻譯館史略」, 『出版史料』, 1, 18~32쪽.

Abstract

Translation and Modern Korea

Hyo-Jeon Kim(College of Law, Dong-A University)

■ Key Word : Translation, Modern Korea, Textbooks, International law, Legal literature, State the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at literature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he field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in modern Korea, from 1895 to 1910.

In chapter II, we analyze the textbook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elucidate the way in which Japanese occupation, commencing in 1905, resulted in interference with this policy, or censorship of it. We can see the most pertinent illustration of the western impact on Korea in a text dealing with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1864), W. A. P. Martin's Chinese translation of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36) by Wheaton; 『萬國公法(An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a translation of *Das moderne Völkerecht*(1868) by J. C. Bluntschli; and 『易言』, a translation of a Chinese book, *I-yen* (1871) by Cheng Kuan-ying.

In chapter IV, we collect legal literature, addressing both constitutional law and procedural law, and analyze each book and document in the original, in order to elucidate its meaning, as well as its influence on Korean society.

In chapter V, we examine works of political science and state theory. It is

remarkable to realize that Ahn Chongwha's translation, *Kukgabak Kangnyung* (*Program on State theory*), was based on Liang Chi Chao's Chinese translation, which referred to Kato Hiroyuki's Japanese translation of Bluntschli's German version.

At this time, Korean intellectuals read and used Chinese texts in the original. In order to build a nation state, to propagate the national language, and to enlighten people through the diffusion of knowledge, they also translated a considerable quantity of foreign literature by way of Chinese and Japanese.